소식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15호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의2 신설(2016.5.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신설(제3조)

1) (표시대상) 제과 ·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주로 조리 · 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대상 영업자가 조리 · 판매하는 식품

2) (알레르기 유발 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21종

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신설(제4조)

1) 주문하는 시점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6-734호, 2016. 12. 2. ~ 12. 22.)

2)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7. 2. 24.)

소식 2

「식품 및 축산물 표시 · 광고 인증 ·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동 고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허위표시 ·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증 · 보증 표시 · 광고의 허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외국 정부기관의 인증 · 보증인 경우 인증 · 보증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 인증 · 보증인 경우 인증 · 보증 표시 · 광고 종류 제한 없음[단서 추가]

1) 외국 정부기관인 경우 인증 · 보증하는 표시 · 광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 현행 고시에서는 식약처장이 신뢰성을 인정하여 표시 · 광고를 허용하는 인증 · 보증의 종류를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으로 정하고 있음

1.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2.「식품 및 축산물 표시 · 광고 인증 ·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7호, 2017.3.1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 외국 정부기관의 인증 · 보증인 경우 종류의 제한 없이 표시 · 광고 허용

3. 각 시 · 도에서는 관할 시 · 군 · 구에 고시 개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기관 및 단체는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고시내용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식품 및 축산물 표시 · 광고 인증 ·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7-17호, 2017.3.15.)

2.「식품 및 축산물 표시 · 광고 인증 ·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전문(제2017-17호, 2017.3.15.).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비규제) : (2017. 2. 28.)

3) 행정예고 : (2017. 2. 15. ~ 3. 8.)

소식 3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8호

1. 개정 이유

독일 및 캐나다산 알가공품의 신규 품목에 대한 수입허용요청이 있어 해당 품목을 수입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수입허용 알가공품 품목 추가 (안 별표 제2호라목)

1) 독일(전란액 등) 및 캐나다(난백액) 알가공품 신규 품목 한시적 수입 허용

나. 농식품부의 AI 종식 선언 후 3개월까지 수입허용기한 명시(부칙)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7. 2. 9. ~ 3. 2.)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7. 2. 28.)

소식 4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00호

1. 개정 이유

수입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수입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박람회 등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 등으로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면제 근거 신설 (안 제7조제4호)

식품의 수출입 등 교역 증가에 따라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나.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 검사항목을 명문화 (안 제8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 검사항목의 범위를 조문에 명시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부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하여 검사 면제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주방용 기구 또는 용기의 경우 사후 수리를 위하여 부품의 수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정밀검사를 통하여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던 제품의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

라. 정밀검사 대상 단성분 농약 232종을 212종으로 조정하고, 농약명을 식품공전과 일치되도록 수정 (안 [별표 3])

1) 단성분 농약 232종 중 무작위표본검사와 중복되는 37종을 삭제하고, 기준 · 규격이 신설된 17종을 추가하여 212종으로 조정

2) 이 고시에서 규정한 일부 농약명과 식품공전에서 고시한 농약명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어 식품공전에 고시된 농약명으로 수정

마.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1)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미국산 체리를 인정범위에 추가

2) 부적합이력이 발생한 칠레산 키위(양다래) 및 브라질산 초콜릿가공품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바. 마늘의 관능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추가 (안 [별표 5])

마늘에 수경재배한 마늘을 혼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능검사항목에 수경재배한 마늘의 혼입 여부 검사 및 판정기준을 추가하여 수입검사의 투명성 및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7. 1. 31. ~ 2. 28.)

2) WTO통보(2017. 2. 6. ~ 4. 7.)

3)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확인증 발급(2017. 1. 24.)

소식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1. 개정 이유

위생상태가 불량한 알가공품의 유통 · 판매로 소비자의 불신 및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를 해동판매 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미생물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을 도입하고, 식용란의 살모넬라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고시에서 원료알과 식용란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원료알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7. 러]

1) 축산물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의 해동 판매 허용
3)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나.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2. 1. 가. (9), 제3. 3. (3) (아), 제3. 3. (3) (차)]

1) 원료알의 보관기준을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으로 이동하고, 원료알이 알가공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는 식용란임을 명확히 함
2) 알내용물 채취 시 난각표면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 등이 알내용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분리 또는 압착방법을 통한 알내용물 채취 금지 규정 신설
3) 알가공품의 제조 ·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다. 미생물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1. 1. 도, 제4. Ⅱ. 9. 가. (5) (다), 제4. Ⅱ. 9. 가. (5) (라), 제4. Ⅱ. 9. 가. (5) (마), 제4. Ⅱ. 9. 파. (가) 4), 제4. Ⅱ. 9. 어]

1) 식중독균 등 미생물의 신속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방법 도입 필요
2)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칙 및 일반사항 개정
3)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을 위한 관련 시험법 개정
4) 축산물 중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용어 개정[안 제2. 1. 가. (10), 제3. 3. (3) (자), 제4. Ⅱ. 9. 파. (3) (가) 2), 제4. Ⅱ. 9. 파. (3) (가) 3), 제4. Ⅱ. 9. 거. (3) (가) 2), 제4. Ⅱ. 9. 거. (3) (가) 3), 제4. Ⅲ, 제4. Ⅲ. 3, 제4. Ⅲ. 3. 다. (1) (나)]

'원료알'과 '식용란'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원료알 관련 용어 개정

소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 (2017. 3. 3.)

2) 행정예고(공고 제2017-124호, 2017. 3. 13 ~ 4. 2)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미생물분과(2017. 4. 3.)

– 기준 · 규격분과(2017. 4. 4.)

소식 6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전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5호

1. 개정 이유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적용대상의 범위 설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설정(안 제3조, 별표1)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 (2017. 2. 28.)

2) 행정예고(공고 제2017-126호, 2017. 3. 13 ~ 4. 2)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기준 · 규격분과(2017. 4. 4.)

소식 7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6호

1. 개정 이유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달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권장유통기간 신설[별표 4]

1)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

2) 달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7. 3. 13. ~ 2017. 4. 2(공고 제2017-125호, 2017.3.13.)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 2017. 4. 3 ~ 4. 5(서면)

3) 규제심사 : 국무총리실 비규제 확인증 발급(2017. 3. 3.)

소식 8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3호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지정함에 있어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적용 대상영업자를 규정(제3조)

○ 지정 신청 수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타 영업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와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영업자는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설정

나. 위생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지정방법(제4조)

○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분야, 실질적 평가를 위한 일반분야 및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

다. 소정의 교육 · 훈련을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자로 지정(제5조)

○ 지정기관 및 평가기관의 관계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 · 훈련을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라.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 구성(제6조)

○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식품위생관계 공무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마. 효율적인 등급제 지정을 위한 희망등급제 도입(제7조)

○ 신청인이 희망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평가항목을 스스로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후 신청하므로써, 영업자의 인식 제고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평가 신청제 도입(제8조)

○ 지정 신청 수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타 영업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 등급 보류를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권리구제 차원에서 재평가를 최초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2회로 설정

사. 위생상태 지속 유무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제11조)

○ 최초 지정 시의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하고 있는지, 허위 표시 · 광고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소식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145호(2017. 3. 28. ~ 4. 17.)

2)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7. 5. 1.)

붙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고시 전문 1부.

소식 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5호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 등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등 21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프로테아제"의 제조균주 추가 등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필요
2)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Ⅱ. 5. 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3) 한시적 기준 · 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Ⅱ. 5. 가.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4) 착색료 용도의 "흑당근추출색소"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Ⅱ. 5. 가. 흑당근추출색소)
5)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나. 총칙 중 용어 정비 및 "프로테아제"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제조균주 확대 및 제조방법 명확화 필요
2) 식품공전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총칙의 용어 개정 및 pH 범위 명확화(I. 2. (2)~(3), 3. 15))
3) "프로테아제(곰팡이성)"의 제조균주로 "Aspergillus melleus" 추가에 따른 정의 개정 (II. 4. 가. 프로테아제)
4) "퍼셀레란"의 제조방법 명확화에 따른 정의 개정 (II. 4. 가. 퍼셀레란)
5) 제조방법 확대에 따른 산업 활성화 및 규정 명확화로 민원 이해 제고

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 세분화에 따른 사용기준 정비(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소브산" 등 소브산류 3품목의 사용대상 식품에 소스류, 과 · 채주스, 탄산음료 추가에 따른 사용기준 개정 및 이에 따른 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류 6품목의 병용 사용기준 정비(II. 5. 가.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소식

4) “5’-우리딜산이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환자용 식품 추가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건강기능식품(희석제품)에 대한 규정 개정(II. 5. 가. 5’-우리딜산이나트륨, 프로필렌글리콜)

5) 식품공전의 용어(과일류)와 일치되도록 총칙 용어 정비에 따른 “유동파라핀”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정비(II. 5. 가. 유동파라핀,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6) 조제유류 등 영 · 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목록에 산도조절제 용도의 “수산화칼륨” 추가(II. 5. 다)

7)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에 따른 관련 민원 해소

라.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 개정

1)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필요

2) 비소시험법 중 비색법에 품목별 시험용액 조제법 추가(IV. 8. 가)

3)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6-781호, 2016. 12. 27.)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7. 4. 25.) : 원안의결

소식 10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6호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 확대

1)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의 인정범위 확대 필요

2) 식품첨가물 인정범위로 기존의 천연물질로부터 얻은 물질 이외에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도 식품첨가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대상 확대 (제2조)

3) 인정대상 정비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간 개선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4)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별표2])

5) 다양한 식품첨가물 인정대상 확대로 기준 · 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7-062호, 2017. 2. 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7. 4. 25.) : 원안의결

소식 1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개정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7호

1. 개정 이유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사 · 평가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하는 등 영업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심사시 현장조사 생략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영유아식) 이력추적등록을 하고 추가로 조제유류를 등록신청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심사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한함)

나.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조사 · 평가시 현장조사 생략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 · 평가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식품판매업소에 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7. 4. 10. ~ 5. 2.)

2) 규제심사 :

– 비규제 확인(2017. 3. 21.)